

# **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**

의 안 번 호	42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:2003. 2.26  
제출자:김영해의원외 6인

## **1. 주 문**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심사기간은 2003년 3월 7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**2. 제안이유**

- 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## **3. 참고사항 : 없 음**

# 심사계획

## 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심사안건

-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## 3. 활동기간

- 2003년 3월 7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구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종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김영해의원

## 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용	비고
3. 7(금)	제1차조례 (13:3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</li><li>2.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</li><li>3.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</li><li>4.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</li><li>5.평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</li></ol>	